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85
----------	----

제출년월일 : 2011. 0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법정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7,22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05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89백만원이 증액된 228,001백만원 특별회계는 3,064백만원이 증액되어 69,219백만원 임.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2,605백만원, 세외수입 887백만원, 재정보전금 25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24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284백만원, 지방교부세 7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92백만원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4,497백만원(예비비 1,773백만원 포함), 재무활동 52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126백만원, 재무활동 64, 행정운영경비 △126백만원 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